

예산총칙

2020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995,457,165	29,863,715
일반회계	864,931,684	25,947,951
특별회계	130,525,481	3,915,764
공기업특별회계	110,884,477	3,326,534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3,550,781	1,006,523
하수도사업특별회계	77,333,696	2,320,011
기타특별회계	19,641,004	589,230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989,308	59,679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1,223,069	36,692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516,545	15,496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11,157,120	334,714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3,894,962	116,849
지하수특별회계	860,000	25,8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,713,284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3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